

# 산업피해구제제도 ①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요

### I. 산업피해구제제도

####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 ① 덤핑방지 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 GATT 제6조, WTO 덤핑방지협정, 관세법 제10조

- ② 상계 관세 제도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지원될 때, 관세를 추가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 GATT 제6조, 제16조, WTO 보조금 · 상계관세협정, 관세법 제13조

- ③ 긴급수입제한제도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대외무역법 제26조~30조

### II.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정

#### ■ GATT체제 이전

-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국내법에 도입  
• 1903년 캐나다가 관세법에서 덤핑방지관세 도입

- 미국은 1894년 상계관세제도를 도입(윌슨법)한 후 1916년 반덤핑제도 채택
- 1906년 호주도 캐나다와 유사한 반덤핑제도 채택
- 긴급수입제한제도는 1942년 미·멕시코무역협정에서 처음 도입
- GATT체제의 출범(1947)
- GATT 제6조(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규정), 제19조(긴급수입제한규정) 채택
- 1967년 캐네디라운드에서 GATT 덤피ング방지협정 제정(1979년 개정)
-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GATT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정
- WTO체제의 출범(1995)
- GATT 및 그 부속협정을 승계 및 발전적 보완
- 덤피ング방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협정 채택

### III. 산업피해구제의 중요성

- WTO체제의 출범(95. 1) 및 OECD가입(96. 1) 등으로 우리경제의 무역자유화 및 대외개방 가속화
- 무역자유화율은 이미 99.9%로 거의 전품목이 국제경쟁에 노출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수산물의 단계적 수입자유화로 산업피해 급증가 우려
- 무역·유통 및 금융·통신·건설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확대될 계획
- 우리경제는 이와 같이 「국경없는 거대경제(mega-competition)」에 직면해 있는 반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종전의 정책수단은 갈수록 제약
- 금융·조세지원 등 보조금 시책에 대한 국제적 감시 증대
-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수입관리시책도 단계적으로 폐지
-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산업피해구제제도(Trade remedy system)」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 세계 각국이 전담구제기관을 신설·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가는 추세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내용

#### 1. 덤피ング방지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 AD)

##### 가. 제도개요

###### ■ 정의

- 외국상품이 덤피ング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retardation)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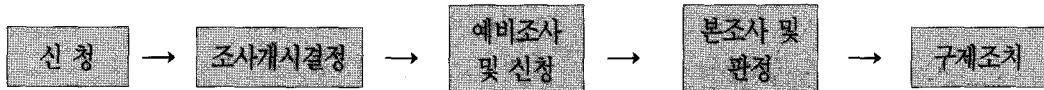
■ 성립요건

- 덤핑(dumping) 물품의 수입사실이 있어야 하고
-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injury)가 있어야 하며
-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간에 인과관계(causality)가 있어야 함

■ 조사신청

-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조사절차



■ 구제조치

- 덤핑차액(dumping margin)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추가 부과
- 수출자가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 또는 수출중지 약속을 서면으로 제의하여 수락하는 경우 조사중지 또는 종결조치

나. 덤핑수입사실의 결정

- ◇ 덤핑이란 수출자가 수출국내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
- ◇ 따라서 덤핑차액 또는 덤핑율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덤핑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
  - 공정비교의 원칙 : 동일한 시기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판매 조건의 차이점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

■ 정상가격(normal value)의 산정

- 수출국내에서의 소비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가격을 사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 수출국내에서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상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국내의 판매량이 제소국에 대한 수출 물량의 5%미만인 경우에는
  -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대표가격(제3국 수출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비·판매비·기타비용·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price)을 사용

-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인 경우에는
  - 경제발전정도·생산기술수준이 유사한 시장경제국가(대체국가)에서의 통상거래가격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사용
  - 미국 및 EU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중국 등은 제외 움직임
-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산정
-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특수관계(현지법인)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의 가격을 사용(수출가격)
- 수출가격이 없는 경우 즉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현지법인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사용
- 덤픽차액 및 덤픽마진율의 산정
-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dumping price)을 차감하여 덤픽차액을 산정
  - 덤픽마진 =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픽마진율은 덤픽마진을 수입가격(CIF)나눈 백분률로 계산함

$$\text{• 덤픽마진율} = \frac{\text{정상가격} - \text{수출가격(FOB)}}{\text{과세후 수입가격(CIF)}} \times 100$$

- 미소기준(de minimis)에 의한 조사의 종결
- 미소 덤픽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
  - 덤픽차액이 2% 미만인 경우, 조사를 종결
- 무시할만한 수입물량(negligible imports)
  -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픽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물품 총수입량의 3% 미만이고,
  - 3%미만 점유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 합계가 동종물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종결

#### 다. 산업피해의 결정

- ◇ 덤픽수입사실이 확인되면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국내산업 확립의 지연 등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

## &lt;참고&gt;

## &lt;정상가격과 덤핑 가격의 조정요소&gt;

정상가격 (Normal value)	임평가격 수출가격(EP)	구성수출가격(CEP) 한국내 재판매가격
공급구 통상거래가격	한국수출가격	한국내 재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기타</li> </ul> </li>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보증비</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기타</li> </ul> </li> <li>○ 과세상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환급</li> </ul> </li> <li>○ 거래단계의 차이</li> <li>○ 물리적 특성의 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기타</li> </ul> </li>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보증비</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은행수수료</li> <li>- 기타</li> </ul> </li> <li>※ 거래단계차이, 물리적 특성 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 가격에서 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비</li> <li>- 보험료</li> <li>- 포장비</li> <li>- 창고료</li> <li>- 기타</li> </ul> </li> <li>○ 판매조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인</li> <li>- 리베이트</li> <li>- 판매수수료</li> <li>- 품질보증비</li> <li>- 광고비</li> <li>- 신용비용</li> <li>- 은행수수료</li> <li>- 기타</li> </ul> </li> <li>○ 현지법인의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할인</li> <li>- 현지법인 리베이트</li> <li>- 현지법인 판매수수료</li> <li>- 현지법인 판매관리비</li> <li>- 관세·통관·운송부대비</li> </ul> </li> <li>※ 거래단계차이, 물리적 특성차이, 과세상의 차이는 정상가격에서 조정함</li> </ul>
조정된 정상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조정된 수출가격

- ◇ 또한 덤픽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규명
  - 국내동종산업의 범위
    - 덤픽물품과 동종물품(like product)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집합체
    - 동종물품은 덤픽물품과 동일하거나 덤픽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 물품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결정
    - 당해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 수입가격이 동종제품의 국내가격보다 낮거나 국내가격 상승에 장애요인이 되며
    - 덤픽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고용·임금·자본조달·기술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질적 피해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의 결정
    - 당해 품목의 수입증가 또는 수입급대 가능성
    - 덤픽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출국내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 수입국내 동종물품의 재고상황 등으로 보아
    - 산업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경우
  - 국내산업확인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여부 결정
    - 국내산업의 투자·가동률·손익·시장점유율 등의 측면에서 기대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결정
  - 덤픽수입사실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causality)
    - 덤픽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함
      -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영상 실패 또는 일반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산업피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WTO협정은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조사 관행은 덤픽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요인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일반적으로 인정

〈WTO 협정문〉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라. 기타 주요사항**

-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생산자의 총생산량보다 많고,
- 지지의사를 표명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만 조사개시 가능
-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 예비조사 결과 긍정판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중의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제공을 명령(잠정조치기간 : 4월이내이나 6월까지 연장가능)
  - 최종판정시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시행되면, 그 효력이 자동 소멸
- 재심사(review)
  - 덤핑방지관세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
  - 이해관계인은 덤핑방지관세 시행 1년 경과후 또는 종료전 6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연장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 부과는 종결되며, 인정되면 연장 부과 조치
-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 dumping)
  - 덤핑판정을 받은 업체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생산한 후 우회수출하는 경우
  - WTO협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국·EU 등은 국내법으로 활용

#### 〈반덤핑 조사·판정 CASE〉

##### 1. H형강(러시아산)

- 조사신청('96. 10. 26)
- 신청인 : 강원산업(주)
- 신청품목 : 러시아산 H형강(H-Beam)

##### ■ 조사개시 결정('96. 11. 14)

- 조사대상물품 : H형강(H-Beam, HSK7216.33.1000, 7216.332000)
- 조사대상기간
  - 덤핑율 조사기간 : '95. 7. 1 ~ '96. 6. 30

- 산업피해 조사기간 : '93. 1. 1부터 산업피해 판정시까지 정보이용가능한 기간으로 함  
 ○ 조사대상 물품공급자 : Nizhny Tagil Steel Works

■ 예비판정('97. 3. 14)

- 판정요지 : 산업피해 긍정예비판정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15.43% ~ 15.64%

■ 최종판정('97. 6. 12)

- 판정요지 : 산업피해 긍정최종판정(15.13% ~ 15.18%)  
 ○ 덤핑방지관세부과 : '97. 4. 15부터 5년간

■ 덤핑방지관세 부과효과

- '97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이후 러시아산 H형강의 수입이 전면 중단됨  
 ○ 신청기업인 강원산업(주)의 시장점유율은 '96년 35%에서 '97년에는 50%로 상승후 '99년에는 46% 유지

〈판매량 · 시장점유율 변화동향〉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판매량	물 량	689,000	1,076,000	653,000	528,000
	금 액	245,390	391,788	277,700	190,000
시장점유율(%)		35.0	50.0	50.0	46.0

## 2. 유리장섬유

- 조사신청('93. 8. 9)  
 ○ 신청인 : 한국베트로텍스(주)  
 ○ 신청품목 : 미국, 일본, 대만산 유리장섬유  
 ■ 조사개시결정('93. 9. 7)  
 ○ 조사대상품목 : 미국 ·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HSK7019.100000, 7019.31.000)

(다이렉트로빙, 어셈블드로빙, 췄스트랜드 및 췄트스트랜드 매트)

○ 조사대상기간

- 덤플링률조사 : '93. 2. 1 ~ '93. 7. 31(6개월간)

- 산업피해조사 : '92. 4 ~ 판정시점

■ 예비판정('94. 1. 11)

○ 판정요지 : 산업피해 긍정예비판정

○ 잠정dump방지관세 부과 : 9.10% ~ 43.0%

■ 최종판정('94. 4. 12)

○ 판정요지 : 산업피해 긍정최종판정(10.3% ~ 58.7%)

○ dump방지관세 부과기간 : '94. 4. 12부터 5년간

■ 재심사('99. 4. 21)

○ 판정요지 : 덤플링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  
(10.3% ~ 58.7%)

○ 덤플링방지관세 부과 기간 : '99. 4. 12부터 2년간

■ 덤플링방지관세 부과효과

○ 덤플링수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93년 28.8%에서 '94년 1.9% 및 '99년 2.5%로 급격히 감소

○ 반면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은 '93년 69.1%에서 '99년 97.3%로 대폭 증가

<유리장석유 국내수급추이>

(단위: 톤, %)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국내총수요	32,508	40,554	46,242	46,532	51,134	41,239	50,612
수 입 품	dump수입 (시장점유율)	9,370 (28.8)	773 (1.9)	667 (1.4)	416 (0.9)	126 (0.3)	182 (0.5)
	기타국 수입 (시장점유율)	681 (2.1)	2,672 (6.6)	375 (0.8)	650 (1.4)	544 (1.0)	249 (0.6)
국내생산품 (시장점유율)	22,457 (69.1)	2,672 (6.6)	45,200 (97.8)	45,466 (97.7)	50,464 (98.7)	40,808 (98.9)	49,251 (97.3)

자료 : 국내생산품은 생산자 제출자료, 수입품은 관세청 통계연원보

## <참고>

### 세계의 반덤핑제소 추이('87~'99. 6)

#### ■ 개요

- '87.~'99. 6 기간중 전세계 덤피ング제소건수는 총 2,491건으로 연평균 199건임
- WTO체제가 출범한 '95년에는 강화된 제소요건 등으로 인해 제소건수가 전년대비 34.1% 감소(154건)
- 국가별 제소분포
  - 미국 457건(18.3%), EU 408건(16.3%), 호주 405건(16.2%), 멕시코 210건(8.4%), 캐나다 207건(8.3%), 아르헨티나 142건(5.7%), 브라질 119건(4.8%) 등 순임
  - 우리나라는 총 59건 제소로 2.4% 차지(제11위)

### 〈연도별·국가별 덤피ング제소 현황〉

(단위 : 건)

제소국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6	계
미국	15	40	24	34	63	83	32	48	14	22	16	38	28	457
E U	28	27	18	48	29	42	21	43	33	25	41	22	31	408
호주	22	16	21	47	68	71	59	15	5	17	42	12	10	405
멕시코	18	11	7	11	9	26	70	22	4	4	6	14	8	210
캐나다	31	15	13	15	11	46	25	2	11	5	14	9	10	207
아르헨	0	0	6	6	1	14	27	17	27	22	15	8	11	142
브라질	0	1	1	2	7	9	34	9	5	18	11	19	3	119
한국	0	1	3	2	0	5	6	8	1	13	15	3	2	59
기타	5	14	11	3	40	30	26	68	153	95	73	42	24	484
계	119	125	98	162	228	326	300	232	253	221	233	167	127	2491

## 산업피해

### ■ 국가별 피해소 분포

- 중국 276건(11.1%), 미국 206건(8.3%), 한국 164건(6.6%), 일본 156건(6.3%), 브라질 118건(4.7%) 등 순임
- 우리나라는 제3위 피해소국으로서, 피해소점유율은 6.6%임

〈국가별 덤핑피제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브라질	대만	소계	총계
총계	276	206	164	150	118	113	1,027	2,491
비율	11.1	8.5	6.4	6.3	4.7	4.6	41.2	100.0

### ■ '99 상반기중 각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 '99 상반기 현재 세계 각국의 반덤핑조치 유효건수는 840건에 달함
- 국가별로 미국 317건, EU 149건, 캐나다 77건, 멕시코 70건 등이며
- 우리나라는 유효 조치건수가 28건으로 전체국가중 세계에서 9번째임

〈'99 상반기 각국별 반덤핑조치 유효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	터키	한국	기타	계
총계	317	149	77	70	39	34	28	126	840
비율	37.7	17.7	9.2	8.3	4.6	4.0	3.3	15.0	100.0

### ■ 전통적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의 반덤핑제소 이용 추이

- '99. 6 기준 미국·EU·캐나다·호주 등 이른바 Big 4 Group이라 불리는 전통적 이용자들의 제소 건수가 1,477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
- 멕시코·브라질·한국·인도 등 신규 이용자들은 40.8% 차지
- 그러나 93년을 기점으로 덤피ング제소의 주도권은 전통적 이용국에서 신규 이용국으로 전환
- 신규 이용국의 제소비중이 92년 이전의 21.8%에서 93년 이후의 54.6%로 높아졌음